광흥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22-97 번 호

제출년월일: 2022. 9. .

제 출 자: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전통문화 전승·보존을 목적으로 조성된 광흥당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광흥당 운영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1) 추진근거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」제19조의 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 -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제3조(지방문화원의 육성 등)
 -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8조(지방문화원의 사업)
 - 「서울특별시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제2조(구청장의 책무)
- 2) 추진 필요성
 -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향토문화 전문기관으로서 광흥당 위탁운영을 관리해 온 마포 문화원에 위탁
 - 적정 규모 이상의 조직·인력 및 다수의 문화재 관리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관리 가능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: 광흥당 운영 및 관리

- 1) 광흥당과 부속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
- 2) 광흥당 운영에 관한 사항
- 3) 공민왕사당과 부속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
- 4) 공민왕사당 운영에 관한 사항
- 5) 공민왕사당 등 문화재와 연계한 향토문화 사업에 관한 사항
- 6) 향토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1) 위치: 마포구 독막로21길15 (창전동)

2) 규모: 연면적 382.01 m² (대지면적 438.42 m²)

구 분	면 적	내 용	비고
지상1층(한옥)	$106.92\mathrm{m}^2$	교 육 실(3), 대 청(1)	사주문, 전통담장
지하] 층(철근콘크리트)	$275.09 m^2$	다목적실(1), 관리실(1)	

※ 관련시설: 공민왕사당: 등록문화재 제231호(2006.3.2)

마. 민간위탁기간: 2023. 1. 1. ~ 2025. 12. 31.(3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: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적격여부 심사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1) 소요예산: 201,200천원(구비 100%)

2) 산출근거

구분	금액(천원)	산출내역	비고
계	201,200		
광흥당 관리	139,200	- 인건비 111,202천원(종사자 3명) - 일반운영비 등 27,998천원	구비
프로그램 운영	62,000	- 강사료 및 행사운영비 62,000천원	구비

아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1)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제3조 및 제8조,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 흥에 관한 조례」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은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음
- 2) 다수의 문화재 관리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수탁 포기 우려없이 안정적으로 운영관리 가능함

자. 민간위탁 추진일정

1) '22. 10월 :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기관 선정

2) '22. 11월 : 민간위탁 협약 체결

3) '23. 1월 : 위탁 운영 개시

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」

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
-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- 1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시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

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

제3조(지방문화원의 육성 등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방문화원의 사업)

-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.
- 1. 지역문화의 계발 보존 및 활용
- 2. 지역문화(향토자료를 포함한다)의 발굴・수집・조사・연구 및 활용

. . .

- 8.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
-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「서울특별시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

제2조(구청장의 책무)

①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 장"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(마포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서울 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마포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. 이하 "문화원"이라 한다)을 적극적으로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

제8조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

-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·성질·규모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.
- 3.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-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 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21.5.6.>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>